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- 법제처의 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”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(자구수정)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(안 제2조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 명칭 수정(안 제5조 제1항 제5호)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 중 “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” 삭제(안 제6조 제2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, 제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- 법제처의 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”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(자구수정)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(안 제2조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 명칭 수정(안 제5조 제1항 제5호)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 중 “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” 삭제(안 제6조 제2항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안건의 분산 효과,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.
- 또한 상위법률 인용조문의 명칭 수정,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현재 도내 10개 시의회 중 7개 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6조(징계의 사유)

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-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제42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

-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
[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적용 대상 등)

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"출자·출연 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[지방공기업법] 제77조의 3 ☞ <2014. 3. 24 삭제>

제77조의3(설립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(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, 출자·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.